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3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3
가. 총괄적 검토	3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	8
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11
라.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신설	18
마. 벌칙	2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가.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방역업무 중 가축의 살처분,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안 제57조 및 안 제60조).

【 개정안의 내용 】

조	조 제목(개정안 기준)	개정 내용
제2조	정의	(제2조제9호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
제5조의 5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제5조의5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및 휴업·영업재개·폐 업시 신고제도
제5조의 6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6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의 7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5조의7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제5조의 8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8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등록한 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 9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제5조의9 신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및 가축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제57조	벌칙	(제57조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60조	과태료	(제60조제3호의7부터 제3호의10까지 신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및 그 방역과 관련된 업(業)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¹⁾

그런데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소독·방제 외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을 법률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며,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를 발굴·소멸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임.

【 가축폐기물처리업 현황 】

구분	현황
정의	○ 가축 살처분,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폐사축 처리 등의 방역업무 수행
운영현황	○ 전국 73개 업체
인력현황	○ 평균 7명 * 살처분시 50명 이상 동원 가능
수입구조	○ 축종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등에 따른 평균 비용 * 가금: 2,000원/수, 돼지: 100,000원/두, 소: 600,000원/두
장비·시설	○ 차량 1대 이상, 살처분 장비, 소독 장비, 방역물품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 방식 】

구분	내용
랜더링	○ 살처분한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방식
고정식 랜더링	○ 살처분한 사체를 랜더링 설비가 있는 공장으로 이송하여 고온 멸균처리(170~180℃) 후 유지와 고형분으로 분리하는 방식 * 공정: 차량소독 → 사체 투입 → 열처리 및 멸균 → 유지·고형분 분리 → 잔존물 교반·압축·냉각·분쇄 → 이물질 분리 → 잔존물 배출 * 유지는 공업용 연료나 사료, 고형분은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
이동식 랜더링	○ 살처분한 사체를 농장에서 바로 열처리·멸균할 수 있는 장비로 열처리 후 퇴비화 처리하는 방식 * 공정: 농장 내 이동식 랜더링 장비 설치 → 사체 투입 → 랜더링 처리 → 퇴비화 * 고정식 랜더링과 유사하나, 유지를 분리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화학적 처리	○ 살처분한 사체를 수산화칼륨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가수분해하여, DNA조차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분해하여 처리하는 방식 * 공정: 사체 투입 → 알칼리 가수분해 처리 → 액상처리물 배출
매몰 처리	○ 살처분한 사체를 액비저장조, FRP통 등의 저장조에 매몰한 후, 관리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발굴하여 소멸 처리하는 방식 * 공정: 매몰지 조성 → 사체 투입 → 매몰지 관리 → 매몰지 발굴·소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발굴 금지
소각 처리	○ 살처분한 사체를 폐기물 소각업체로 이송한 후, 소각하여 처리하는 방식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현황 】

(단위 : 건, 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건수	2	5	7	10	10
	살처분두수	4,940 (1,746)	9,472 (7,452)	34,788 (33,687)	104,522 (60,509)	44,781 (44,781)
구제역	발생건수	-	-	-	11	-
	살처분두수	-	-	-	1,571 (1,571)	-
럼피스킨 병	발생건수	-	-	-	107	16
	살처분두수	-	-	-	6,455 (6,206)	145 (14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시즌 ³⁾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2023-24년	2024-25년 (‘24.10.기준)
	발생건수	109	47	75	31	1
	살처분두수	29,934,293 (10,113,933)	7,308,155 (4,984,084)	6,696,442 (4,250,178)	3,666,902 (2,105,231)	850 (850)

주) 살처분두수의 괄호 안 숫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방적인 살처분의 경우를 제외한 살처분두수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대상 가축은 현행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므로 원활한 방역관리를 위해서는 그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을부터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계절성을 보여, 발생상황을 연도 단위가 아닌 시즌 단위로 구분함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살처분 대상 가축과 그 사체 등을 취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역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정의하고 그 등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축 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나 정확한 업체 현황이나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축 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하고 등록제도와 방역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임.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 사육장소 내의 오염우려물품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해체·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업무 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업무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그 등록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4) ‘포함한다’ →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소각 업무’ → ‘소각하는 업무’로 자구정리가 필요해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살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⁵⁾ 법 문언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안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조제9호나목에서 사용되는 ‘오염우려물품’은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약칭되고 있는바,⁶⁾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안 제2조제9호나목에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생략)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이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안 제2조제9호 각 호의 업무가 이러한 예방적인 살처분의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사항과 등록취소·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영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현행	개정안
<신 설>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또는 제6호8)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현행	개정안
	2. <u>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u> 4. <u>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u> 5. <u>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u> 6. <u>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u> 7. <u>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u> 8. <u>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⁹⁾을 한 경우</u> <u><신 설></u> <u>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설비, 방역시설과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u>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또는 제6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로의 자구정리가 필요해 보임

9) “영업” → “가축폐기물처리업”으로의 자구정리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안 제5조의5제1항의 등록·변경등록 제도와 안 제5조의5제2항의 휴업·휴업 후 영업재개 및 폐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¹⁰⁾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의 준수사항과 등록의 취소사유 및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살처분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참고로 안 제5조의7과 관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 중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유는 안 제60조제3호의8, 제3호의9 및 제3호의10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도 해당되는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태료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게 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과의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나,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가축방역위생관리업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신고와 등록 모두 강학상 신고로 볼 수 있으나, 판례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신고제와 등록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는 법적 효과 발생에 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신고로, “등록”은 법적 효과 발생에 그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고 있음 (대판 1998. 4. 24. 97도3121)

첫째, 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8까지 계속해서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안 제5조의8의 조 제목에서 약칭하지 않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바, 안 제5조의5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를 “가축폐기물처리업자”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5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를 “방역위생관리업자”로 약칭하고 있음.¹¹⁾

둘째, 안 제5조의6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면 이와 유사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역시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일정 범위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바,¹²⁾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거나 거래관계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¹³⁾

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동물의 생명을 다루고 불가역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가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거래관계의 안정성도 강조될 것으로 생각됨.

셋째, 개정안은 안 제5조의7 각 호의 경우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제재처분 여부 및 수준(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을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안 제5조의7 각 호에 따른 제재처분 】

호	내용	제재처분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제2호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4호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호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6호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등록취소
제7호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8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369.

제3호와 관련하여, 단순한 영업 미개시 또는 미신고 휴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로서 규정하는 것은 그 제재의 수준이 과도할 수 있어 보이고,

제6호와 관련하여,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제17조 제7항제5호에 따른 요구·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행정청이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선택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⁴⁾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필수적 등록 취소 사유로 정기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회피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제재 수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제8호와 관련하여,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营业을 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¹⁵⁾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영업한 자에게 제재처분으로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라.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신설

개정안은 신설하려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u>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현행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한 점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¹⁶⁾

이에 개정안은 신설되는 가축폐기물처리업과 현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조 제목 중 “영업자”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조 제목을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방역위생관리업자”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9제1호에서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⁷⁾¹⁸⁾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17) 이 경우 안 제5조의9제1호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18) 같은 조 제2호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약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2호 역시 약칭으로 표

마. 벌칙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2. ~ 9.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7조(벌칙)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u> <u>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u> 2. ~ 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 ----- -----. 1. ~ 3의6. (현행과 같음) <u>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u>

현할 수 있을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u>
<u><신설></u>	<u>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u>
<u>3의7. · 3의8. (생략)</u>	<u>3의11. · 3의12. (현행 제3호의7 및 제3호의8과 같음)</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i)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와 부정등록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ii)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 미신고자, 등록취소 처분 등에 따르지 않은 자 및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규정하며, iii)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 및 부정등록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경우 미신고자 및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은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고 그 사체를

취급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행정질서벌(과태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과태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등을 취급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실효성 확보 수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27